

접 수	의안과 - (20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출입국관리법 기혼 외국인 자녀 체류조건에 관한 추가 수정안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6 년 2월 16일

청 원 인

성 명 : 현현중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소 개 의 원 :

(인) 외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성명 : 현현중
건명	출입국관리법 기혼 외국인 자녀 체류조건에 관한 추가 수정안
소개년월일	2016년 2월 16 일

소개의견

최근 대한민국에 비전문취업을 목적으로 입국 및 체류를 허가 받은 외국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액투자 혹은 전문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의 자녀의 경우에는 방문거주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아동권리보장에 앞장서는 반면에 비전문취업, 흔한 말로 외국인 노동자라고 부르는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들의 자녀의 경우는 체류허가를 내주지 않는 차별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비전문취업 입국에 해당하는 외국인 자녀의 권리를 보장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2조 제 2항을 이행하는 목적에서 다음과 같이 출입국관리법 제 23조에 추가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본 청원인이 제안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개정문
<p>제10조(체류자격) 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p> <p>②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0.5.14.]</p>	<p>제10조(체류자격) 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p> <p>②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0.5.14.]</p> <p>제10-1조 법무부령으로 정한 비전문취업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체류 자격을 획득한 외국인의 자녀에 한하여 대한민국 주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p> <p>① 제10-1조에서 명시하는 외국인의 자녀란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한다.</p> <p>② 제10-1조에 의해 부여받은 외국인 자녀의 거주권은 부모의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처리한다.</p> <p>③ 제10-1조에서 명시하는 외국인의 자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권 부여가 거부 될 수 있다.</p> <p>1. 검역법 제 2조에서 정의하는 감염병에 해당하</p>

	는 경우 2. 출입국 관리법 제 7조에 명시 되어 있는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3.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소 개 의 원

인

청원서

1. 제안이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013년 5월 통계에 의하면 20세 미만 불법체류자의 521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기업투자, 무역경영, 연구 혹은 특정활동을 목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 자녀의 경우에는 방문동거 또는 거주외국인 체류자격을 부여 받아 대한민국에서 부모와 합법적인 동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전문취업으로 체류자격을 획득한 외국인의 자녀는 위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체류자격 획득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차별적인 실태 안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들은 불법체류자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며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 아동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89년 11월 20일에 비준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2조 2항에 따르면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을 이유로 받게 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외국인 자녀 지원에 관련한 구체적인 법안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을 들어 국제엠네스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과 같은 NGO단체들은 대한민국에게 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인은 비전문취업으로 체류자격을 획득한 외국인의 자녀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출입국관리법 제 23조 추가수정안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2. 주요골자

출입국관리법 제 10조에 다음과 같은 별칙을 추가한다. 법무부령으로 정한 비전문취업을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획득한 외국인의 자녀에 한하여 대한민국 주거권을 부여한다는 구문을 추가한다. 이어서 제 10-1조에 제 ①항으로 제10-1조에서 명시하는 외국인의 자녀란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한다는 항을 추가하며 제 ②항으로 10-1조에 의해 부여받은 외국인 자녀의 거주권은 부모의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항을 추가한다. 덧붙여 제 ③항 제10-1조에서 명시하는 외국인의 자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권 부여가 거부 될 수 있다는 항을 추가하고 그 기준을 검역법 제 2조에서 정의하는 감염병에 해당하는 경우와 출입국 관리법 제 7조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그리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로 명시한다.

-신구문 대조표-

현행	개정문
<p>제10조(체류자격) 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p> <p>②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0.5.14.]</p>	<p>제10조(체류자격) 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p> <p>②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0.5.14.]</p> <p>제10-1조 법무부령으로 정한 비전문취업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체류 자격을 획득한 외국인의 자녀에 한하여 대한민국 주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p> <p>① 제10-1조에서 명시하는 외국인의 자녀란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한다.</p> <p>② 제10-1조에 의해 부여받은 외국인 자녀의 거주권은 부모의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처리한다.</p> <p>③ 제10-1조에서 명시하는 외국인의 자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권 부여가 거부 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역법 제 2조에서 정의하는 감염병에 해당하는 경우 2. 출입국 관리법 제 7조에 명시 되어 있는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3.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p>청원인 성명 : 현헌중</p> <p>청원인 주소 :</p> <p>청원인 전화번호 :</p>	